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10

서 울 행 정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	2016구합67813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
원 고	A
피 고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7. 1. 19.
판 결 선 고	2017. 2. 2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6. 1. 20.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 5,814,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10

가. 원고는 2007. 7. 30. B에게 [redacted]구 C 다세대주택(9세대, 이하 '이 사건 주택'이라 한다)을 1,210,000,000원에 양도하였고, 2007. 10. 1.경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세대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800,000,000원, 취득가액을 413,463,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였다.

나. [redacted]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 중 비과세대상 부분의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2012. 2. 1.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,760,970원(가산세 포함), 농어촌특별세 10,554,720원(가산세 포함)을 경정·고지하였고, 피고는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 5,976,090원(가산세 포함, 이하 '이 사건 지방소득세'라 한다)을 부과·고지하였다[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구 지방세법(2011. 12. 31.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93조 제2항, 제5항에 따라 역삼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 등의 고지서와 함께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].

다. 피고는 2012. 11. 16. 원고에게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체납(독촉) 고지서를 발송하였다.

라. 피고는 2013. 6. 28. 원고의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7,231,020원의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[redacted]구 D아파트 [redacted]호(이하 '이 사건 아파트'라 한다)를 압류하였다(한편, 피고는 2016. 11. 15.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여 배당을 받았다).

마. 원고는 2013. 7. 1. 이 법원에 [redacted]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(2013구단13757)을 제기하였고, 이 법원은 2015. 10. 22.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역삼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따른 국세경정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, 피고는 2016. 1. 7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10

이 사건 지방소득세 중 가산세 부분을 직권 취소하여 다음과 같이 감액 처리하였다.

당초 세액		경정 후 세액		취소 세액	
본세 및 가산세	가산금	본세	가산금	가산세	가산금
5,976,090원	3,403,970원	3,764,970원	2,143,330원	2,211,120원	1,260,640원

바. 한편, 원고는 2014. 10. 16.경 피고에게 '구청장에게 바란다'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압류되어 있으니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체납세액을 회수하여 가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,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민원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.

사. 피고는 2016. 1. 20.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방소득세 3,670,710원[1] 및 가산금 2,143,330원 합계 5,814,040원이 체납되어 있으니 2016. 1. 22.까지 이를 납부하라는 내용으로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체납세액 고지'라 한다).

아. 원고는 2016. 2. 11. [redacted]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, [redacted]시장은 2016. 3. 31.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을 제1, 2, 4,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 취지

이 사건 지방소득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적이 없고, 2016. 1. 21.경에 비로소 처음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 고지서를 받았다. 이 사건 지방소득세는 그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할 수 없는바, 부과처분이 무효이고, 징수처분 역시 무효이다.

게다가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청산일인 2007. 7. 30.로부터 약 9년 6개월의 시일이 경과하였으므로, 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

1) 2015. 10. 28. 94,260원이 충당되어 감액되었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10

되었다.

결국 징수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체납세액 고지는 위법하므로, 취소되어야 한다.

3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.

살피건대, 피고가 2012. 2. 1. 이 사건 지방소득세를 부과·고지한 사실, 피고가 2013. 6. 28. 이 사건 지방소득세에 대한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원고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피고가 2016. 1. 20.에 한 이 사건 체납세액 고지는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체납사실과 가산금의 액수를 통지함과 동시에 그 납부를 재차 독촉한 행위로서 원고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, 별개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.

따라서 이 사건 체납세액 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(덧붙여 보건대, 원고는 자신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부과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과처분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,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원고가 2012. 3. 21.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, 위 주장은 이유 없다).

4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7-03-10

재판장 판사 윤경아

판사 김세현

판사 민병국